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mm)	소음허용기준 [dB(A)]	소음허용기준[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가. 185 이하	70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나. 185 초과 245이하	71	
다. 245 초과 275이하	72	
라. 275 초과	74	

2.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구 분	타이어 종류	소음허용기준 [dB(A)]	비 고
가.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용 타이어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일반용 타이어	72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74	
나. 중형·대형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일반용 타이어	73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2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75	

비고

1.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타이어의 상세한 종류와 소음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2.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란 카카스(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가 표준하중 타이어의 구조보다 더 높은 공기압으로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3.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4. "특수용 타이어"는 도로 위 또는 밖에서 사용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타이어로서 이를 나타내는 "MPT, ET, ML 등"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5. "견인 타이어"란 끌어서 당기는 기능이 우수한 타이어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차축에 주로 장착하는 "Traction"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6.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한다.